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벌칙에 관한 연구

박 광 서*

I. 서 론

II. 원산지표시위반의 의의 및 관련 법률

III. 원산지표시위반 관련 대외무역법 벌칙의 검토

IV. 결 론

주제어 : 원산지,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위반, 원산지 벌칙, 대외무역법, 불공정 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산피법

I. 서 론

원산지표시제도는 최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와 FTA의 확산 등에 따라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도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률들은 앞 다투어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을 강화하는 추세에 있다.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대외무역법¹⁾은 최근에 수입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산피법’)²⁾의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함으로써 대외무역법과 차이를 두고 있다.

대외무역법과 산피법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대외무역법은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 판정기준 등을 규정하고, 산피법은 대외무역법령상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의 수출입을 불공정무역행위로 제재하고 있다. 다음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적용 범위로써 대외무역법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수입통관 이후 무역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의해 원산지의 허위표시등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산피법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끝으로, 양 법률은 최근(2010.4.5) 개정으로 과징금은 3억 이하로 동일해 졌지만, 벌칙(징역·벌금)에는 차이가 발생하여 대외무역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산피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있다.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론과 관련하여, 원산지제도 또는 FTA원산지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있지만, 원산지표시 관련 ‘벌칙’에 특정한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보다는 대외무역법 및 관련 법령을 비교 검토하는 규범적 연구와 문헌연구를 위주로 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관한 벌칙을 다른 법률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의 벌칙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과 산피법은 모두 지식경제부 소관 법률이면서도 그 벌칙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법률의 관계 정립 및 체재개편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중복처벌 가능성 및 제재의 균형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식경제부 소관의 상기 두 법률 및 타 부처 소관 관세법,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검토하였다.

1) 제정: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895호, **최종개정 2010.04.05** 법률 제10230호 (시행: 201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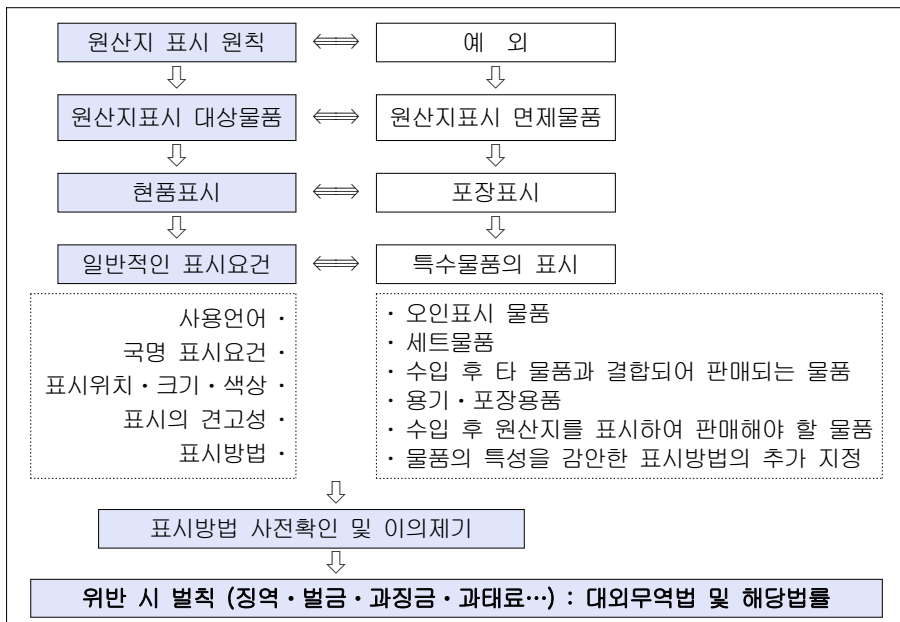
2) 제정: 2001년 2월 3일, 법률 제6417호, **최종개정 2010.04.05** 법률 제10231호 (시행예정: 2010.10.6)

Ⅱ. 원산지표시 위반의 의의 및 관련 법률

1.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표시 위반의 의의

원산지표시란 결정된 원산지 국가를 수입상품에 보기 쉽고 견고하게 표시 (인쇄, 주조, 라벨 등)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산지표시 위반의 유형에는 대외무역법(제33조)³⁾을 기준으로 할 때, ① 원산지 허위표시, ② 원산지 오인표시, ③ 표시된 원산지의 손상/변경, ④ 미표시, ⑤ 표시방법 위반 등이 있다. 대외무역법 및 관련 법령의 원산지표시 규정의 체계는 <그림 1>과 같다.

< 그림 1 > 원산지표시 규정의 체계도



*자료 : 「관세청, 원산지표시실무, 1999, p.15」를 바탕으로 수정

- 3) · 법 § 33조 제3항 :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법 § 33조 제5항 :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2.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주요 법률 및 목적

원산지규정이란 물품의 국적을 정하는 기준으로써 법령, 협약 등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대외무역법에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다.⁴⁾ 원산지표시 위반 및 벌칙에 관한 주요한 국내 법규에는 대외무역법을 포함하여 <표 2>와 같은 법령들이 있다. 기타법률로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GATT개도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규정(부속서Ⅱ-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규정),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IP)등이 있다.

< 표 1 >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주요 법령·고시

순번	법령	소관부처
1	대외무역법	지식경제부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지식경제부
3	관세법	관세청
4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림수산식품부
5	소비자기본법	기획재정부(한국소비자원)
6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9	FTA관세특례법	기획재정부
10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관세청

① 대외무역법⁵⁾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4) 1991년 이전에는 관세법시행령에 협정관세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64년), 원산지 결정기준('73년)을 운영 중이었으며, 대외무역법에는 원산지허위표시 물품의 수출입금지 조항만 두고 있었다.

5) 제정: 1986.12.31 법률 제3895호, 최종개정: 2010.04.05 법률 제10231호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다. (제33조)

②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산피법’)⁶⁾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금지하고 있다. 즉 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 ②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 ③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조)

③ 관세법⁷⁾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을 제한하여 세관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이 ① 원산지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③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통관을 불허한다. (제230조)

④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이하 ‘농수산물원산지법’)⁸⁾은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거짓 표시 등을 금지하여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④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

6) 제정: 2001.2.3 법률 제6417호, 최종개정: 2010.04.05 법률 제10230호

7) 제정: 1949.11.23 법률 제67호, 최종개정: 2010.3.31 법률 제10195호

8) 제정: 2010년 2월 4일 법률 제10022호, 시행예정: 2010년 8월 5일

일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등을 불허한다. (제6조)

⑤ 소비자기본법⁹⁾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 등으로 인하여 물품 등을 잘못 선택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물품 등에 원산지등에 관한 표시기준 및 광고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동법 제10조와 제11조에 규정하고 있다.

⑥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¹⁰⁾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에 있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원산지에 특정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⑦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¹¹⁾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정경쟁행위에는 상품이나 그 광고에 의하여 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거래상의 서류 또는 통신에 거짓의 원산지의 표시를 하거나 이러한 표시를 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한다.

⑧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¹²⁾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관련 내용은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관련 조항을 준용하며, 관련 고시에는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확인에 관한

9) 제정: 소비자보호법, 1980.1.4 법률 제3257호, 최종개정: 2010.3.22 법률 제10170호

10) 제정: 1999.2.5 법률 제5814호, 최종개정: 2010.3.22 법률 제10167호

11) 제정: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변경, 1961.12.30 법률 제911호, 최종개정: 2009.12.30 법률 제9895호

12) 제정: 1990.8.1 법률 제4239호, 최종개정: 2010.5.14, 법률 제10282호

고시(2003.9.23, 통일부),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1994.2.5, 관세청), 남북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2003.7.31) 등이 있다.

㉑ FTA관세특례법¹³⁾은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세의 부과·징수 및 감면,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과 자유무역협정에 규정된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타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등이 있다.

㉒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¹⁴⁾는 관세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확인규칙과 법 제226조, 제230조 및 대외무역법령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 관련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통관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고시이다.

3. 주요 법률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벌칙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법률 중에서 특히 중요한 4가지 법률, 즉 대외무역법, 산피법, 관세법, 농수산물원산지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벌칙을 검토하기로 한다.

1)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벌칙

〈 표 2 〉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구 분	제재내용	제재대상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손상·변경	· 5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 3억원 이하 과징금 or 시정조치	무역거래자 판매자
미표시	"	무역거래자
부적정표시	· 3억원 이하 과징금 or 시정조치	행위자
시정조치위반, 국산 가장 수출 등	· 5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위반자

13) 제정: 2005.12.31, 법률 제7842호

14) 제정: 1991.6.3, 관세청고시 제91-687호, 최종개정: 2010.6, 지경부고시 제2010-118호

대외무역법은 제33조, 제53조의2, 제59조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형사처벌(제53조의2)으로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¹⁵⁾을 병과 할 수 있다. 처벌대상은 ① 허위·오인표시 및 표시손상·변경하여 제33조 제4항 제1~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② 원산지 미표시로 제33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③ 제33조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④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 등의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등이다.

다음으로 행정형벌(제33조)으로써 3억원 이하 과징금¹⁶⁾ 또는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처벌대상은 ① 허위·오인표시로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판매자, ② 표시손상·변경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판매자, ③ 미표시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무역거래자 등이다.

끝으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¹⁷⁾ 부과(제59조 제2항)할 수 있다. 처벌대상은 ①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도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날개 또는 산물(散物)로 거래할 때 제33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② 제33조제5항에 따른 수입물품과 서류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등이다.

15) 벌금(罰金)이란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는 형법상의 형벌이며, 원칙적으로 5만원 이상이다.(형법 제45조), 우리나라 형법은 형의 종류로써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41조)

16) 과징금(過徵金)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행정상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얻는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흡수하고, 오히려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통하여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17) 과태료(過怠料 or 과료(過料))란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적 집행벌이며, 형법상 형벌이 아니다. 구분해야 할 개념으로서 과료(科料)는 형법상 형벌의 일종이며 벌금과 마찬가지로 재산형이며,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제47조)

2) 산피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벌칙

〈 표 3 〉 산피법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구 분	제재내용	제재대상
허위표시, 오인표시, 표시손상, 미표시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수출·수입자
	· 3억원 이하 과징금	해당행위자
부적정표시	-	-
시정명령 불이행	· 매1일당 해당물품 5/1000 미만의 이행강제금	불이행자

산피법은 제11조, 제13조의2, 제40조, 제42조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형사처벌(제40조)으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처벌대상은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제4조 ① 제2호), ② 불공정무역행위 시정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등이다. (제10조 ①)

다음으로 행정형벌(제11조 제3항)으로써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 끝으로 과태료 부과로써 5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다.(제42조)

특기할 점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이다.(제13조의2) 시정명령을 강제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기한까지 시정명령을 불이행 시, 매 1일당 해당 물품 등 가액의 5/1,0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해당 물품 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¹⁸⁾은 해당물품 등 가액에 따라 5단계로 구분하여 제1단계(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1,000(기본금액)을 부과하고,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금액에 각 단계별 추가금액¹⁹⁾을 합산한 금액 이내로 부과한다.

18) 산피법시행령 별표3(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9) 2단계(1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는 2/5,000, 3단계(100억원 초과~1,000억원 이하)는 2/10,000, 4단계(1,000억원 초과~1조원 이하)는 2/15,000, 5단계(1조원초과)는 2/20,000이다.

3) 관세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벌칙

관세법은 대외무역법 및 산피법과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징역, 벌금, 과징금등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통관불허 및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같은 강력한 제도를 제230조, 제238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먼저, 통관불허 또는 경미한 경우 보완·정정(제230조)의 요구이다. ① 원산지표시가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한 부적정표시, ②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한 허위표시, ③ 원산지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미표시 등이 대상이다.

다음으로 보세구역 반입명령(제238조)제도이다. 일명 'Recall제도'라 불리는 동 제도는 관세법상 의무불이행, 원산지표시 부적정,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중 수입통관 후 3개월 이내의 물품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을 명하고, 시정·말소·폐기·반송 등을 취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소비자 보호제도이다.

기타, 관세포탈죄(제270조)를 적용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허위신고죄 등(제276조)을 적용하여 보세구역반입명령에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제277조)를 부과할 수도 있다.

4) 농수산물원산지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벌칙

농수산물원산지법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원산지표시 관련 부분을 종합하여 2010년 2월 4일에 새롭게 제정된 법이다. 따라서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관련 법령의 원산지 관련 벌칙들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의 법령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벌칙규정 중에서 벌금형은 대외무역법과 동일하나, 징역형은 7년으로 중하게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물원산지법은 제14~17조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형사처벌로써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병과(併科)할 수 있다. 누구든지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허위표시·오인표시행위, ②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4조, 제6조①)

다음으로 형사처벌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허위표시·오인표시행위,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15조, 제6조②)

다음으로 형사처벌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및 거짓표시 금지를 위반한 자는 ①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불이행, ②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불이행,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불이행을 처벌하고 있다. (제16조 제9조①)

마지막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5조제4항에 따른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③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④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아니한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기할 점은 ‘명단공개제도’(제9조 제2항)를 두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의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함에 따라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농수산물 등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농림수산물식품부나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표 4〉 원산지위반 관련 주요법률 행위별 규정 내용 및 인적대상

법률 위반행위	대외무역법	산피법	관세법	농수산물원산지법
허위표시	○(무역거래자·판매자)	○(수출·수입자)	○(불분명)	○(불분명)
오인표시	○(무역거래자·판매자)	○(수출·수입자)	-	○(불분명)
손상·변경	○(무역거래자·판매자)	○(수출·수입자)	-	○(불분명)
미 표시	○(무역거래자)	○(수출·수입자)	○(불분명)	-
표시방법위반	○(불분명)	-	○(불분명)	-
기타제도	국산 가장 행위	이행강제금제도	Recall제도	명단공개제도

* “○”는 처벌규정 있음을 뜻함, “괄호()”안은 인적대상을 의미

Ⅲ.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대외무역법 벌칙의 검토

1. 원산지표시 관련 대외무역법 및 산피법의 최근 개정내용

최근(2010.4.5)에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과 ‘산피법’에 주목할 만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선, 대외무역법 개정은 다음과 같이 크게 4가지이다. 첫째, 원산지규정을 절(節)에서 장(章)으로 격상하였다. 즉, 제3장 제5절을 「제3장의2 원산지의 표시등」으로 격상하였는바, 원산지제도의 중요성 및 대외무역법이 원산지제도에 관한 기본법적인 차원에서 합당한 조치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원산지 관련 별도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대외무역법이 무역관련 기본법이라는 성격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장으로 처리하는 것이 차선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원산지표시의 보호대상에 “생산자”를 추가하였다. 즉, 제33조 제1항에 “소비자”를 “생산자 및 소비자”로 변경하여 원산지표시제도의 보호주체로서 국내 제조업자의 보호를 추가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 및 국가 브랜드가 상승함에 따라서 저급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위장 표시됨에 따른 국내 생산자의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한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제53조의2를 신설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 강화하였다. 즉 원산지에 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²⁰⁾ 사실 신설이라기보다는 기존 벌칙 조항인 제54조 제9~11호와 제53조 제8호를 이동하여 통합하면서 벌칙을 강화한 것이다.

넷째, 제33조 제2항 신설하여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다.²¹⁾ 원산지표시제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수입 후 단순한 가공활동을 통해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경우 그 물품 등에 대하여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산피법도 대외무역법과 동일한 일자(2010.4.5)에 개정을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3천만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하였다.(제11조 제3항)²²⁾ 이는 원산지표시 위반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조정하여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둘째, 제13조의2를 신설²³⁾하여 시정명령

- 20) 제53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5)
1. 제33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
 2. 제33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무역거래자
 3. 제33조 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8조에 따른 외국산 물품 등의 국산 물품 등으로의 가장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21) 제33조(수출입물품등의 원산지표시) ②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단순한 가공활동을 거친 수입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 22) 제11조(과징금)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08.12.19, 2010.4.5>
- 23) 제13조의2(이행강제금) ① 무역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이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매 1일당 해당 물품 등 가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액은 해당 물품 등의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0.4.5]

위반 시 무역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무역위원회의 시정명령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여 단속체계를 정비하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조치이다.

〈 표 5 〉 대외무역법·산피법 개정내용 요약

	대외무역법	‘산피법’
규제대상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원산지 표시위반 물품의 수출입거래
주요 개정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물품에 대해 단순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당초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 - 위반 시 과징금 부과(3억원) 처벌조항 없음 · 벌칙 강화: 징역(징3년→5년 이하), 벌금(3천만원→1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무역법 내용('09.4월개정)과 같게 과징금 상향: 3천만원→3억원 · 시정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조항 신설
시행일	2010. 7. 6. (개정일: 2010.4.5)	2010. 10. 6. (개정일: 2010.4.5)

2. 원산지 분야 대외무역법과 산피법의 체제 및 벌칙 개편방향

1)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대외무역법은 1991년 7월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원산지제도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산피법은 대상물품, 표시방법, 판정기준 등에 관해서 대외무역법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대외무역법은 제21차 개정(2008.3.21)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규정(제42조)을 삭제하고 산피법으로 이관하였다. 종전 대외무역법 제42조(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1항 제2호 “누구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에게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 ㉡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제3항 “지식경제부장관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산피법은 제4차 개정(2008.3.21)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고, 제5차 개정(2008.12.19)부터 ‘직접 부과’하고 있다. 즉, “제11조(과징금)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8.3.21)”, “제11조(과징금)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12.19)”, “제40조(벌칙) ① 제4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8.12.19) “제11조(과징금) ③ 무역위원회는 제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가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 행위자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0.4.5)”

2) 법적 지위 및 목적

양 법률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 즉,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관한 기본법이자 일반법적 특성을 가지는 반면에, 산피법은 대외무역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 제정일도 대외무역법은²⁴⁾ 1986년 12월 31일이며, 산피법은 2001년 2월 3일이다.

양 법률은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목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 진흥과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에, 산피법은 불공정무역행위 근절과 산업피해 구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술하면,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산피법은 불공정무역행위 및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고 구제하는 절차를 정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다.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의 목적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국내

24) 대외무역법의 효시는 「대외무역규칙」(1946년1월3일, 군정법령 제39호), 「무역법」(1957년12월13일, 법률 제460호)이며, 「무역거래법」(1967년1월16일, 법률 제1878호)을 거쳐 「대외무역법」(1986년12월31일)으로 변경됨

의 생산자 또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산피법은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 등의 수출입으로 인한 불공정무역행위의 근절이다. 즉, 대외무역법은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법 제33조 제1항), 산피법은 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 ②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 ③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법 제4조)

결론컨대, 산피법은 대외무역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특히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우선하여 산피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3) 체재 및 벌칙의 개편방향

〈표 6〉 원산지위반 관련 행위별 제재내용 (대외무역법·산피법)

유통	위반행위	대외무역법	산피법
수출입 통관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오인표시 수출입 행위 ·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수출입 행위 · 원산지 미표시를 수출입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 3억원 이하 과징금 or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이하 징역 or 3천만원 이하 벌금 · 3억원 이하 과징금
국내 유통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위·오인표시 행위 · 원산지표시 손상·변경 행위 · 원산지 미표시를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 3억원 이하 과징금 or 시정조치 	없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억원 이하 과징금 or 시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 · 외국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국산물품 등으로 가장 금지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하 징역 or 1억원 이하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날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 · 원산지 관련 위반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외무역법과 산피법의 원산지분야 체제개편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제1안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금지에 관한 규정은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한 물품의 수출입행위에 대한 규정은 산피법에 두는 방안이다. 제2안으로 대외무역법에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출입행위 금지 조항을 두고 동 조사권한을 무역위원회에 두거나 위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대외무역법 및 산피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동일한 내용의 법조문을 두 개의 법에 각각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 및 편의성 차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상기 안(案) 중에서 제1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두 법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다르게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은 좋으나 벌칙수준을 동일하게 하고, 하나의 일련된 행위로 인하여 양 법률 모두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과(重課)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대외무역법은 통관 이후 유통단계에서, 산피법은 수출입통관 단계에서 적용된다는 점에서 적용상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나, 무역거래자가 해외 또는 국내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출입하는 경우 등에는 계속된 행위과정에서 두 법률이 모두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대외무역법과 산피법의 벌칙 조항을 동일하게 규정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처벌의 대상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로 상이하므로 현행처럼 다른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처벌의 대상인 행위가 다르나 “원산지표시 위반”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바, 벌칙의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옳다. 굳이 차이를 둔다면, 대외무역법은 일반법이고 산피법은 특별법이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산피법의 벌칙이 중(重)해야 할 것이다.

3. 대외무역법의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벌칙의 비교

1) 대외무역법의 벌칙 규정에 관한 일반적인 검토

최근의 벌칙을 강화하는 추세는 원산지 위반의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즉, 원산지 위반행위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다른 무역관련 위반행위에 비해서 죄질이 다르며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원산지 관련 법률들이 대부분 벌칙을 상향하는 추세이지만 신중할 필요도 있다. 즉, 최근에 FTA의 확산과 더불어 원산지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여러 법률 등에서 그 벌칙을 강화하는 추세이지만, 문제는 개별 법률들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없어서 유사한 성격의 행위에 대해 벌칙에 있어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이나 국가법 체계의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별부처가 개정 법안들을 제출할 때,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 전체의 중복 처벌가능성 및 제재의 균형여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대외무역법은 <표6>과 같이 원산지 '부적정표시'에 대하여 벌칙(징역·벌금)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부적정표시는 원산지표시 위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 § 53조의2(벌칙)」의 벌칙대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반복적으로 표시방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를 효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따라서 부적정표시를 법 § 53조의2 벌칙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다른 원산지표시 위반과 동일하게 다루는 것이 형평성면에서 타당하다. 아울러 부적정표시는 <표4>와 같이 산피법의 불공정무역행위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산피법에도 그 근거규정을 추가해야 할 것이다.

대외무역법은 <표3>과 같이 원산지 '미표시'의 제재대상에 판매자를 제외하고 있다.²⁵⁾ 따라서 판매자는 과징금 등의 처벌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하지만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소극적 의무를 무역거래자뿐만 아니라 판매자까지 확대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원산지표시 대상을 미표시 상태로 판매하는 판매상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 33조 ④항 단서에서 “제3호의 경우에 무역거래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것을 삭제해야 한다.

25) 제33조 ④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의 경우만 해당된다.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타 법률 벌칙과의 비교

개정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3억원 이하)은 타 법률과 비교할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징역의 경우 가장 최근에 제정된 농수산물원산지법의 7년 및 부정경쟁법의 10년보다는 낮고, 벌금은 표시광고법의 1억5천만원 보다는 낮다. 하지만 산피법, 관세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보다는 높아서 비교적 균형 있는 선에서 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

다만, 과징금(3억원), 과태료(2천만원)는 대규모 거래의 경우 원산지표시위반에 따른 이득의 규모에 비해 높은 금액이 아니므로 범죄예방 효과가 의문시될 수 있다. 허위, 오인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서 3~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사례를 감안하여 과징금(과태료)의 최고액은 정액이 아니라 물품의 가액 이상으로 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그 부과액을 점차 늘리는 차등 부과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표 7 〉 원산지 위반관련 주요 형벌(징역·벌금) 및 행정적 제재의 상한

순번	법령	형벌		행정적 제재	
		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1	대외무역법	5년	1억원	3억원	2천만원
2	산피법	3년	3천만원	3억원	5백만원
3	관세법	3년	벌금*	1억원	1천만원
4	농수산물 원산지법	7년	1억원	규정 없음	1천만원
5	소비자기본법	3년	5천만	규정 없음	3천만원
6	표시광고법	2년	1.5억원	5억원*	1억원
7	부정경쟁방지법	10년	3천만원*	없음	2천만원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년	1천만원	규정 없음	300만원

- ※ 1) 「관세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매출액에 2/10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4) 모든 법률이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3) 대외무역법 내 다른 위반사항과 비교

대외무역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대외무역을 목적으로 하므로 필수불가결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인 제재를 원칙으로 한다. 이를 구분하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증개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법 § 53조 제1항)을 부과하는 경우이다.²⁶⁾ 이것은 전략물자 관련 벌칙으로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를 위해서 가장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수입하는 물품 등의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법 § 53조 제2항)을 부과하는 경우이다.²⁷⁾ 이것은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및 전략물자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에 따른 조항이다. 우리나라의 무역질서 유지에 필요한 중요한 내용에 관한 부분을 지키기 위한 조항으로 역시 중과하고 있다.

다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법 § 53조의2)을 병과하는 경우이다.²⁸⁾ 상술한 원산지 관련 벌칙으로 벌칙 수준의 상향은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자 보호라는 법익의 중요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대외무역법 내의 다른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관련 벌칙의 과중여부를 판단할 때,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다른 무역관련 위반행위와 죄질이 다르며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비교적 중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 54조)을 부과하는 경우이다.²⁹⁾ 이것은 대외무역법의 기본원칙, 전략물자, 원산지제도의 목적보다 다소 경미한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6) 대외무역법 제53조(벌칙) 제1항

27) 대외무역법 제53조(벌칙) 제2항

28) 대외무역법 제53조의2(벌칙)

29) 대외무역법 제54조(벌칙)

IV. 결 론

원산지제도의 중요성이 높아 감에 따라 최근에는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벌칙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며, 대외무역법과 산피법도 최근(2010.4.5) 개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문제는 개별 법령에서 유사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른 제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적용 및 예측 가능성이 결여된다는 점이다.

원산지표시 위반과 관련하여 검토될 수 있는 국내법에는 대외무역법, 산피법, 관세법, 농수산물원산지법,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등 10여개가 있다. 이들 법령 중에서 산피법은 대외무역법과 마찬가지로 지식경제부 장관 소관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벌칙(징역·벌금)이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농수산물원산지법은 농수축산물과 관련된 원산지표시 법령들을 종합하여 최근에 제정(2010.2.4) 및 시행예정(2010.8.5)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관련 ‘벌칙’을 대외무역법 내 다른 위반사항과 지식경제부 소관 산피법 및 타 부처 소관 법령과 비교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대외무역법 내 다른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과 형평성을 검토하여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은 다른 무역관련 위반행위와 죄질이 다르며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비교적 중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 대외무역법과 산피법은 최근(2010.4.5) 개정으로 과징금은 3억원 이하로 동일해 졌지만, 대외무역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산피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두 법은 목적을 달리하므로 다르게 나누어서 규정하는 것은 좋으나 벌칙수준을 동일하게 하고, 하나의 일련된 행위로 인하여 양 법률 모두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이 차이를 둔다면, 대외무역법은 일반법이고 산피법은 특별법이라는 관점에서 ‘특별법우선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산피법의 벌칙이 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 3억원 이하)은 최근 제·개정된 다른 법률 수준과 비교할 때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징금(3억원), 과태료(2천만원)는 대규

모 거래의 경우 원산지표시위반에 따른 이득의 규모에 비해 높은 금액이 아니므로 범죄예방 효과가 의문시될 수 있다. 허위, 오인 등 원산지표시 위반으로서 3~4배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사례를 감안하여 과징금(과태료)의 최고액은 정액이 아니라 물품의 가액 이상으로 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는 그 부과액을 점차 늘리는 차등 부과가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기타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제재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단속기관간 업무공조 및 단속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여러 단속기관에 의한 중복 단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많은 품목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제’의 도입과 민간 감시 프로그램인 ‘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 농수산물원산지법에서 도입한 ‘위반자명단공개’ 및 산피법에서 도입한 ‘시정명령제’등에 관한 내용을 원론적 차원에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원산지표시실무」, 관세청, 1999
- 박광서·이병문·오원석,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41권, 2009. 2
- 박광서·오원석,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연구」, 무역위원회, 2009. 9
- 정재완,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9권 제2호, 2008.
- 지식경제부, 「대외무역법」, 2009.11
- <http://www.ktc.go.kr/index.jsp> (무역위원회)
- <http://likms.assembly.go.kr/law/jsp/main.jsp> (법률지식정보시스템)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http://www.mke.go.kr/> (지식경제부)

ABSTRACT

A Study on the Penalty of the Breach of Country of Origin Labeling in Korea Foreign Trade Act

Park, Kwang So

The Korea Foreign Trade Act(KFTA) was revised the penal provisions of the breach of the Country of Origin Labeling(COOL) recently. The ceiling of penalties became to 5 years for imprisonment, one hundred or three hundred million won for fine. The level of penalties are adjudged quite fair but the amount of penalty should be increased according to the profits from the breach or the nature of crime in some cases.

The problems of the penalties are differences between KFTA and other related laws. There are related several laws on the breach of the COOL such as KFTA, Unfair Trade related Law, Customs Law, Consumer Protection Law, Law of COOL on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etc.

The penal provisions of the breach of the COOL has more heavier level than other the breach because of the criminal qualities. The problems are the penalty differences between the KFTA and the Unfair Trade Law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KFTA's penal provisions need to equate with Unfair Trade Law as long as same breaches on the COOL.

The government can also consider some policies to rigid enforcement of breaches on the COOL. There are the Country of Origin Tracking system, the RoO Paparazzi System, Make public the names of habitual RoO Violators, Correction Order of breach of the COOL etc.

Key Words : Rules of Origin(RoO), Country of Origin Labeling(COOL),
Korea Foreign Trade Act(KFTA), Penal Provisions of RoO